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의 안 번 호	176
------------	-----

제출연월일 : 2003. 1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시설·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 나.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다.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 지원, 본사이전시 3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의 이전보조금 지원 및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의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공장 시설 이전보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5조).
- 라. 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6조).
- 마. 기업이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이전하여 시관할구역안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원 이하의 고용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7조).

- 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 시관할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30만원이하의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8조).
- 사.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설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하되 이전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각 지원한도액은 기업당 2억원으로 함(안 제9조).
- 아. 이전기업의 지방세감면, 공유재산지원 및 기업지원자금의 우대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차.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기업유치심의 위원회 및 기업유치기획단 설치운영 근거를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8조).
- 카.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 및 교부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
 - 지방세법제274조 내지 제276조
- 나. 예산조치 : 기업유치 결정후 일반회계 예산확보 보조금 지급
- 다. 합의 : 예산담당관실 합의
-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마. 입법예고 : 2003. 10. 20 ~ 10. 29 (10일간)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 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시설용지 지원) ①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장시설을 산업단지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이전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시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장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2. 공장에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공장의 시설·장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체비·운반비 및 설치비

④ 본사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 본사에 근무하는 3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보조금은 공장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2.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시관할구역안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3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인원 1인당 3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 시관할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1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3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의 범위) ①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 이전 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사업서비스업 및 영화산업으로 한다.

②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1항의 사업서비스업과 영화산업은 공장시설에 사업장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서 투자금액이라 함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운 시설·장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2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 제274조 내지 제276조 및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자치구의 구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은 대전광역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등) ①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기업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유치관련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③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적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유치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과학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기타 기업유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

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가동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가. 지방자치법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 · 管理에 관한 事務

거. 地域經濟의 육성 및 지원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라. 지방세법

-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②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도시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